

자연과학대학 교수회 규정

제정 1992. 9. 4

개정 1994. 12. 16

1998. 4. 3

2001. 12. 14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18조에 규정한 교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 및 의장) 본 교수회는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(기금교수는 제외)로 구성하며 의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.

제 3 조 (교수회의 종류) 정례 교수회는 매 학기(계절학기는 제외) 첫째 달과 마지막 달 각 1회씩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교수회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4 조 (심의안건 및 위임사항) 교수회의 심의안건은 별표에 따라 심의, 의결 또는 위임(심의, 의결)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.
(별지 참조)

제 5 조 (개회 및 의결)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 표】

심의 안건 및 의결(위임) 사항

심의안건내용	심의	위임 (심의 및 의결)	의결	비고
1. 학칙,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	기획위원회		교수회	
2. 입학, 수료 및 졸업		학사위원회	교수회	
3. 학생지도, 장학 및 후생		장학위원회	교수회	장학금 규정 제8조
4. 학생포상 및 징계		포상 및 징계위원회	교수회	학생포상에 관한 규정
5. 교과과정		교과과정위원회 학부운영위원회	교수회	학칙 제30조
6. 대학인사위원의 선출			교수회	학칙 제37조
7. 학과 간 또는 학부의 업무조정		학부(과)장회	교수회	
8. 전공·학부 또는 협동과정·학과 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			교수회	
① 전공·학부	학부운영위원회 학부(과)장회			
② 협동과정·학과	기획위원회 학부(과)장회			
9. 기타 (삽입)				
장기발전계획	기획위원회	학부(과)장회	교수회	
예산 및 결산	기획위원회	학부(과)장회	교수회	
연구교수 추천		인사위원회	교수회	
평의원 등 선출			교수회	
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	기획위원회	학부(과)장회	교수회	
자연대 기금관리	기금관리운영소위원회		교수회	
자연대 부설연구소 설치 및 폐지	기획위원회		교수회	

※ 의결이 위임된 경우에는 교수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, 위임된 사항이라도 중요한 안건인 경우에는 교수회에 회부하여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자연과학대학 학부(과)장회 규정

제정 1992. 9. 4
개정 1993. 4. 16
1997. 12. 12
2000. 3. 10
2001. 3. 23
2005. 7. 1
2021. 9. 13

제 1 조 (목적) 서울대학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연과학대학의 주요현안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(과)장회를 둔다.

제 2 조 (구성) 학부(과)장회는 학장, 교무부학장, 학생부학장, 연구부학장, 기획부학장과 대학(원)의 각 학부(과)장 및 협동과정 주임 중 학장이 위촉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.

제 3 조 (의장) 학부(과)장회의 의장은 학장이 되고, 의장의 유고시에는 교무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회의) 학부(과)장회는 학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조 (기능) 학부(과)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부(과)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2. 입학,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
3.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
4. 학부(과)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
5. 교수회에서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

부 칙

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